의안번호	2202594
의 뢰 인	김현정의원
회 답 일	2024. 10. 28.
추계번호	24D2585

온라인플랫폼 중개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안

【비용추계서】

국회예산정책처
National Assembly Budget Office

Ⅰ. 비용추계 결과

❑ 제정안에 따라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 분쟁조정협의회(이하 “협의회”)를 두는 경우 정부 출연금이 추가적으로 발생할 수 있고[1],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에 관한 서면실태조사 실시 등에 따른 추가재정소요는 2026년부터 매년 5,840만원씩 2026년부터 2030년까지 5년간 총 2억 9,200만원(연평균 5,840만원)이 발생할 것으로 추계됨

[표 1] 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 2026~2030년

(단위: 백만원)

	2026	2027	2028	2029	2030	합계	연평균
분쟁조정협의회의 설치 및 구성(안 제21조)	33.4	33.4	33.4	33.4	33.4	167	33.4
서면실태조사(안 제32조)	25	25	25	25	25	125	25
합 계	58.4	58.4	58.4	58.4	58.4	292	58.4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72조제2항에 따라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을 법인으로 하고, 제4항에 따라 정부는 조정원의 설립과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출연하거나 보조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Ⅱ. 재정수반요인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1	안 제18조(표준온라인플랫폼중개거래계약서의 사용 및 작성)	공정거래위원회는 온라인 플랫폼 중개서비스업자와 온라인 플랫폼 이용사업자 구성원으로 하는 사업자단체(이하 “온라인플랫폼이용사업자단체”) 간의 불공정한 내용의 중개계약이 체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온라인플랫폼중개거래계약서의 작성 및 사용을 권장할 수 있음	재량규정
2	안 제21조 (분쟁조정협의회의 설치 및 구성)	온라인 플랫폼 중개사업자와 온라인 플랫폼 이용사업자 사이의 분쟁을 조정하기 위하여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 분쟁조정협의회를 둠	의무규정
3	안 제30조 (위반행위의 조사 등)	공정거래위원회는 신고가 있거나 이 법에 위반되는 혐의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필요한 조사를 할 수 있음	재량규정
4	안 제31조 (신고 포상금)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법의 위반행위를 신고하거나 제보하고 그 신고나 제보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를 제출한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음	재량규정
5	안 제32조 (서면실태조사)	공정거래위원회는 공정한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에서의 공정한 질서 확립을 위하여 온라인 플랫폼 중개서비스업자와 온라인 플랫폼 이용사업자 사이의 거래에 관한 서면실태조사를 실시함	의무규정

Ⅲ. 비용추계의 전제와 상세내역

1. 재정수반요인별 추계 여부

연번	조·항(조제목)	추계여부	비고(추계 미실시 사유)
1	안 제18조(표준온라인플랫폼중개거래계약서의 사용 및 작성)	-	미대상: 공정거래위원회가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에 관한 표준계약서 마련을 위한 연구용역비 등은 공정거래위원회의 연구용역 예산 내에서 충당 가능할 것으로 보여, 추가재정소요는 없을 것으로 예상됨
2	안 제21조 (분쟁조정협의회의 설치 및 구성)	○	
3	안 제30조 (위반행위의 조사 등)	-	미대상: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위반행위에 대한 조사는 공정거래위원회 내부 조사인력을 투입하여 수행하도록 할 예정이므로, 이에 따른 추가재정소요는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됨
4	안 제31조 (신고 포상금)	-	미대상: 제정안에 따른 신고포상금은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이미 확보된 사업 예산('신고포상금 제도 운영' 사업 3,050백만원)으로 충당 가능할 것으로 보여 추가재정소요는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됨
5	안 제32조 (서면실태조사)	○	

2. 비용추계의 총괄적 전제

❑ 안 부칙 제1조는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추계기간은 2026년부터 2030년까지 5년으로 함

3. 재정수반요인별 상세 추계내역

가. 분쟁조정협의회의 설치 및 구성 (안 제21조)

❑ 온라인 플랫폼 중개서비스업자와 온라인 플랫폼 이용사업자 사이의 분쟁을 조정하기 위하여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 협의회를 두는 경우 정부출연금이 추가적으로 발생할 것으로 예상됨

○ (현황) 최근 3년간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 설치된 6개 분쟁조정협의회의 위원 수 및 연간 개최회의수, 예산 현황은 아래 [표 2]와 같음

[표 2] 6개 분쟁조정협의회 현황: 2021~2023년

(단위: 명, 건, 백만원)

	위원 수	조정신청사건 처리건			연간 전체회의 개최횟수			연간 소요예산		
		2021	2022	2023	2021	2022	2023	2021	2022	2023
공정거래분쟁조정협의회	7	1,054	922	1,267	16	12	12	19	23	23
가맹사업거래분쟁조정협의회	9	483	425	575	11	11	16	24	31	31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	9	863	678	929	11	14	19	29	31	31
대규모유통업거래분쟁조정협의회	9	25	28	26	2	2	8	11	11	11
약관분쟁조정협의회	9	427	214	278	11	6	9	13	31	31
대리점분쟁조정협의회	9	84	62	76	8	5	7	13	18	18
합 계	52	2,936	2,329	3,151	59	50	71	109	145	145
평 균	9	489	388	525	10	8	12	18	24	24

자료: 한국공정거래조정원(2024.6)

○ (위원 수) 조정원 협의회의 위원수는 기존의 6개 분쟁조정협의회의 위원수(위원장 포함) 평균인 9명의 위원으로 가정

○ (회의수당) 회의수당은 기존의 6개 분쟁조정협의회의 사례를 준용하여 위원장 40만원, 위원은 30만원씩 지급하는 것으로 가정함

○ (연간 회의 개최횟수) 연간 회의 개최횟수는 기존의 6개 분쟁조정협의회의

사례를 참조하여 전체회의는 10회(9명)로 가정하며, 소회의는 6회(3명)로 구분함

- 안 제23조에서 협의회의 회의는 위원 전원으로 구성하는 회의(이하 “전체회의”)와 공익을 대표하는 위원 1명, 온라인 플랫폼 중개서비스업자의 이익을 대표하는 위원 1명, 온라인 플랫폼 이용사업자의 이익을 대표하는 위원 1명으로 구성하는 회의(이하 “소회의”)로 구분하고 있음
- 전체회의 개최횟수는 연간 10회로 가정함(6개 분쟁조정협의회의 3개년 평균인 10회로 가정)
- 소회의 개최횟수는 연간 6회로 가정함(2023년 기준 가맹사업거래분쟁조정협의회 연간 소회의 5회, 대규모유통업거래분쟁조정협의회 연간 소회의 7회의 평균인 6회로 가정)

○ (소요비용) 협의회 설치 시 소요비용은 연간 3,340만원으로 추정됨

- (전체회의) 2,800만원(위원장 1명×40만원×10회 + 위원 8명×30만원×10회)
- (소회의) 540만원(위원 3명×30만원×6회)

[표 3] 협의회 설치에 따른 추가재정소요: 2026~2030년

(단위: 백만원)

	2026	2027	2028	2029	2030	합 계
전체회의	28.0	28.0	28.0	28.0	28.0	140
소회의	5.4	5.4	5.4	5.4	5.4	27
합 계	33.4	33.4	33.4	33.4	33.4	167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나. 서면실태조사 (안 제32조)

❑ 공정거래위원회가 공정한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에서의 공정한 질서 확립을 위하여 온라인 플랫폼 중개서비스업자와 온라인 플랫폼 이용사업자 사이의 거래에 관한 서면실태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추가재정소요가 발생

❑ 유사사례를 참조하여 추계한 결과 매년 2,500만원의 추가재정소요가 예상됨

○ 현재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실시하고 있는 서면실태조사 중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와 유사한 사례인 가맹분야 및 대규모유통업 분야 서면실태조사에 소요되는 비용인 2,500만원[2)]과 동일하게 매년 2,500만원으로 추정함

[표 4] 서면실태조사에 따른 추가재정소요: 2026~2030년

(단위: 백만원)

	2026	2027	2028	2029	2030	합 계
서면실태조사	25	25	25	25	25	125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다. 추계결과

❑ 제정안에 따라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 협의회 설치, 서면실태조사 등에 따른 추가재정소요는 5년간 총 2억 9,200만원(연평균 5,840만원)이 발생할 것으로 추계됨

2) 가맹분야 서면실태조사 및 대규모유통업 분야 서면실태조사는 공정거래위원회의 '건전한 유통거래 질서 확립'사업의 내역사업으로 2015년부터 2022년까지 매년 2,500만원씩 편성되어 왔음. 2023년부터는 실태조사 예산을 각각 7,500만원으로 증액 편성하였는데, 이는 국회에서 실태조사 응답률 제고 지적에 따라 대면조사 비용을 각각 5,000만원씩 증액한 결과임

[표 5] 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 2026~2030년

(단위: 백만원)

	2026	2027	2028	2029	2030	합계	연평균
협의회의 설치 및 구성	33.4	33.4	33.4	33.4	33.4	167	33.4
서면실태조사	25	25	25	25	25	125	25
합 계	58.4	58.4	58.4	58.4	58.4	292	58.4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Ⅳ. 부대의견

❑ 없음

Ⅴ. 작성자

❑ 성명

국회예산정책처	분석관	과장
행정비용추계과	여은구	김안나

❑ 대표연락처

성명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여은구	02-6788-4673	cecil@assembly.go.kr